

#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(4-4-10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11조에 의거 설치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법 제11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, 제31조 제3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해당 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
- ② 해당 년도 등록금 및 교육비 산정 근거의 적정성 여부 검토
- ③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 및 검토
- ④ 대학 예·결산에 대한 심의·의결
- ⑤ 대학 잉여금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(개정 2011.9.22.)

1. 교직원(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.)
2. 관련 전문가(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)
3. 학생
4. 학부모 및 동문

② 전 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각 1명씩 선출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에서 책정 및 결정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부위원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모든 역할을 대리한다.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6조(회의소집과 의결)

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위원 1/3이상의 위원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청할 때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등록금 담당부서의 사무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
제8조(비밀유지) 위원 및 간사는 위원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(신설 2018.03.21.)

제9조(공개) 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일시, 장소,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사전에 공개한다. 단, 긴급한 안건 등이 발생하여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(신설 2018.03.21.)

②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단, 공개하기 어려운 기밀 사항이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범위를 해당 회의에서 결정한다.(신설 2018.03.21.)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9월 1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1부터 시행한다.